특허청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

상표 심사절차 안내

우리 청에 상표를 출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고객님의 상표등록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됨을 안내해 드립니다.

고객상담센터 : 1544-8080

1 먼저, 방식심사를 받게 됩니다.

◎ 출원인적격, 필수사항기재,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,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2 심사는 출원순서대로 하며, 지정상품이 속한 분류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◎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 10개월 후에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('10. 6월말 기준).

◎ 심사착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표출원 건수가 연간 12만 6천여 건으로 매년 누적된 출원이 쌓여 있기 때문이며, 고객님 출원의 실제 심사진행상황은 특허청 홈페이지 **'특허로'**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3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보내는 '의견제출통지서'를 받게 되면, 고객님께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심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.

◎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55% 정도가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4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거나, 의견서 등을 통해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출원공고 됩니다.

◎ 출원공고제도는 상표법 제24조에 따라 출원상표를 최종 등록결정하기 전에 일반인에게 공개(2개월간)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(공중심사).

5 출원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심사가 진행되고,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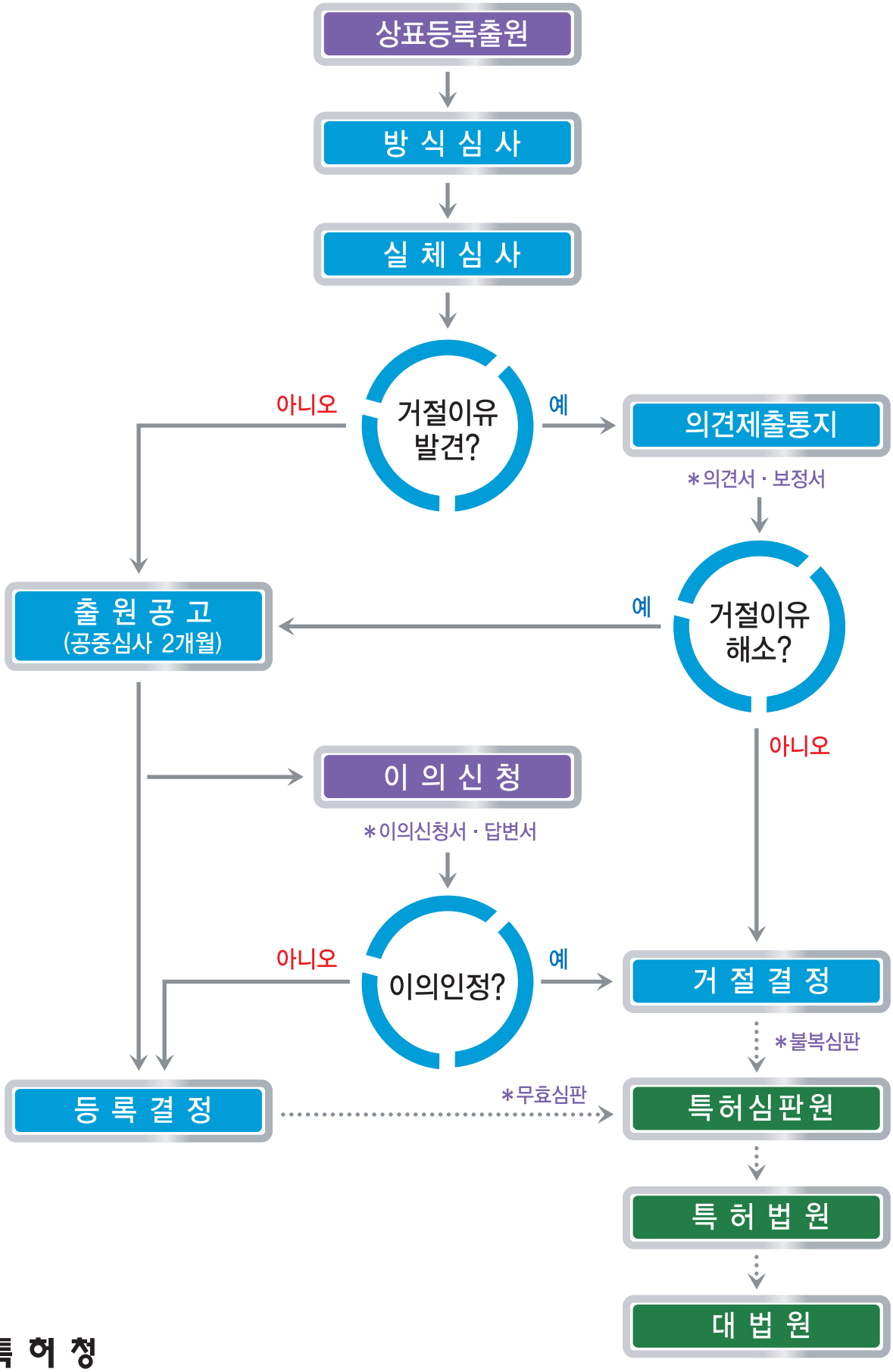
참고

1)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을 2~3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.

2)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'거절결정불복심판'을 제기하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)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(kipo.go.kr)를 참고하시고,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상표심사 흐름도



특 허 청
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